

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1. 10. 12.(수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 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제1항제2호에 따른 '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'에 해당됨
- 보고 가 ~ 보고 나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에 따른 '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'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에 관한 건 - (2011-55(서)-213)

-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- 주요 내용

<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(총 2명) >

분 야	당 초	변 경		
		성 명	출생연도	현 직
기금총괄	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	방송통신위원회 정책기획관		
문화부 추천	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	최현철	'55년	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

③ 보고사항

가. 「방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한-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의 편성비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 -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60%에서 80%로 완화(제57조제4항)

현 행	개정안
전체 외국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을 100분의 6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초과 금지	전체 외국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초과 금지

나.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한-미 FTA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제작물 1개 국가의 편성비율, SO·위성·PP 국내제작의 영화·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을 보고 받음
- 주요내용
 - ①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현행 60%에서 80%로 완화(제8조)

현 행	개정안
전체 외국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을 <u>100분의 60</u> 초과 금지	전체 외국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 방송시간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·애니메이션·대중음악을 <u>100분의 80</u> 초과 금지

② SO·위성·PP의 국내제작 영화 편성비율을 25%에서 20%로 완화(제3조제2항)

현 행	개정안
방송사업자 :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<u>100분의 25</u> 이상	지상파방송사업자 :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<u>100분의 25</u> 이상 SO·위성·PP :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<u>100분의 20</u> 이상

③ SO·위성·PP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을 35%에서 30%로 완화(제3조제3항)

현 행	개정안
지상파방송사업자 :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45</u> 이상 SO·위성·PP·지상파DMB·지상파PP :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35</u> 이상	지상파방송사업자 :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45</u> 이상 지상파DMB :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35</u> 이상 SO·위성·PP :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<u>100분의 30</u> 이상